

##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. 11. 25.

행정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0. 11. 19.
- 제출자: 칠곡군수
- 회부일자: 2020. 11. 20. 회부
- 상정일자: 제270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(2020. 11. 25. 상정·심사·의결)

### 2. 제출설명의 요지

- 제출설명자: 세무과장 이상욱

#### ○ 제출이유

2021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#### ○ 주요내용

| 출연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연<br>예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연사유   | 사업개요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한국지방세연구원<br>(배진환)<br>(서울 서초구<br>강남대로2길 16) | 11,336천원<br>(전년 대비<br>3,455천원<br>감소) |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<br>전국 광역·기초 지방<br>자치단체가 출연하여<br>운영되는 한국지방세<br>연구원에 대한 법정출<br>연금을 예산에 편성·<br>출연 |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1조에 의거 설립된<br>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출연<br>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87,203<br>백만원)의 1만분의 1.3% 출연<br>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<br>지방세수 증대<br>-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<br>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|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지영)

- 「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」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,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세정과 관련된 연구,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여 지방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
  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서 지방세제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특이사항 없음

6. 소수의견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